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

성 북 구
(복지정책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4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일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일부개정(2019.12.3. 법률 제16666호)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 및 구성(안 제3조~제4조)
- 다. 단장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, 활동평가 등(안 제7조~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조의2 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~④ (생략)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기간

- 예고기간 : 2023.07.13. ~ 2023.08.02.(20일간)

- 예고결과 : 의견없음.

2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3) 인권/부패/성별/아동영향평가 원안 동의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구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·운영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재난안전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재난안전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
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, 외부여건 등

제4조(지원단의 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이 된다.

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성북구 소속 공무원
2. 성북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4.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

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지원단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
2. 활동관리팀

3. 활동지원팀

4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조직과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8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.

1.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

2.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

3. 자원봉사활동의 사진·영상

4.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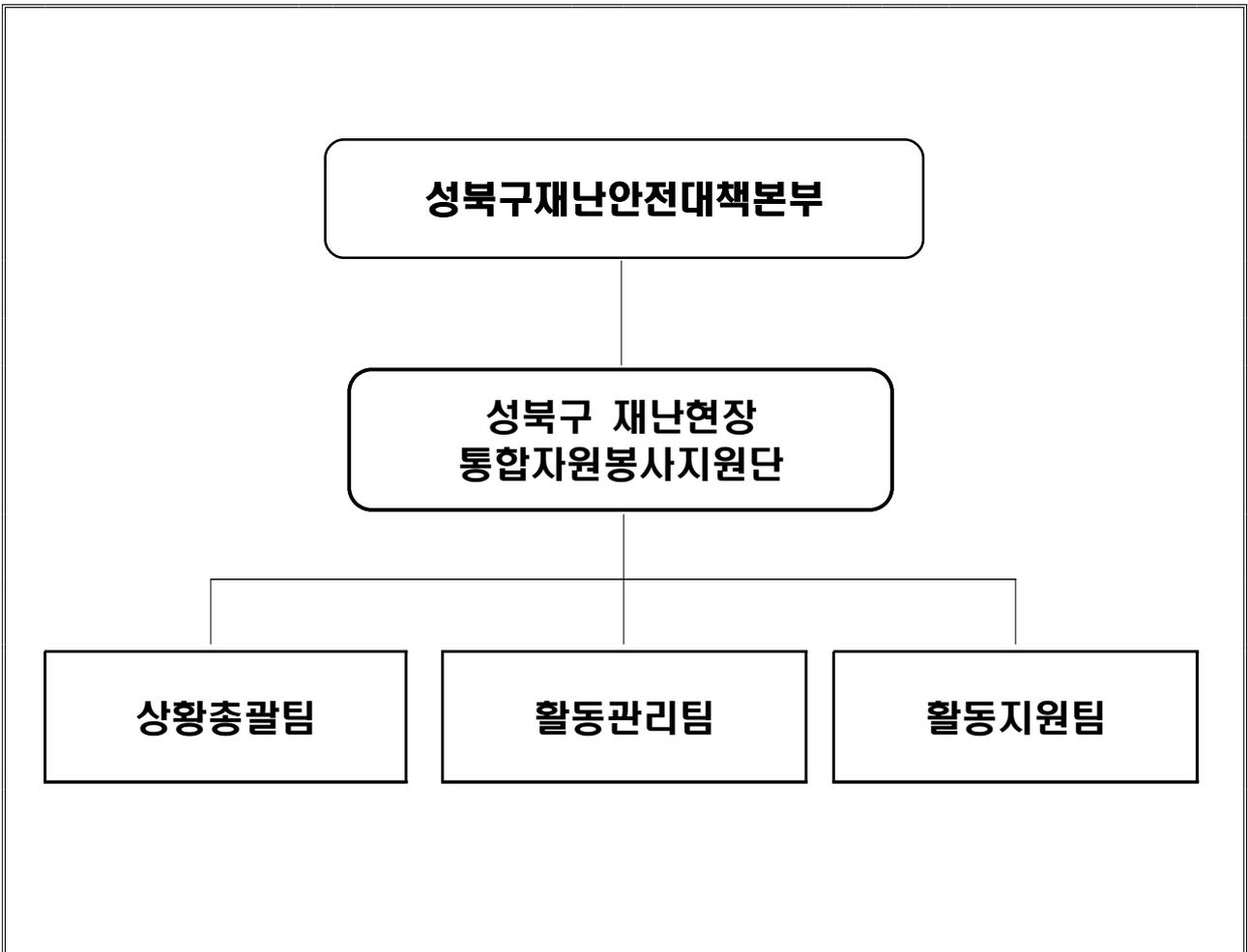
5.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직
(제6조제2항 관련)



[별표2]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
표준 업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>

구 분		담 당 사 무
단 장		-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 -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
실무팀	상황총괄팀	- 재난 발생시 현장 피해상황 및 수요 파악 -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, 보고 등) - 재난현장 자원봉사 지원·관리 -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 등
	활동관리팀	-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-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-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- 봉사활동 인정(시간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) 등
	활동지원팀	-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-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-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-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소요 파악 및 지원 등

비 고

-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일부개정예 따라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제정안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4. 작성자

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장 임 정 선